< 학교규칙 신·구조문 대비표 >

수성초등학교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38조(각종 위원회의 조직) ① 학교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,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,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,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등을 제외한 유사한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.	**제38조(각종 위원회의 조직)** ① 학교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,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,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등을 제외한 유사한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.	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삭제
제40조(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)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 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의한다.	삭제	제40조 삭제
제41조(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)	**제40조(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)**	제40조 삭제에 따른 순서 변경
제42조(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)	**제41조(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)**	
제43조(의무교육관리위원회)	**제42조(의무교육관리위원회)**	
제44조(양성평등 교육)	**제43조(양성평등 교육)**	
제45조(목적)	**제44조(목적)**	
제46조(수성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)	**제45조(수성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)**	
제47조(위원장)	**제46조(위원장)**	
제48조(위원의 자격상실)	**제47조(위원의 자격상실)**	
제49조(회의의 소집)	**제48조(회의의 소집)**	
제50조(당사자의 출석)	**제49조(당사자의 출석)**	
제51조(위원회의 의결)	**제50조(위원회의 의결)**	
제52조(의결 통보 및 처분 등)	**제51조(의결 통보 및 처분 등)**	
제53조(분쟁조정의 신청)	**제52조(분쟁조정의 신청)**	
제54조(분쟁조정의 개시) ① 위원회가 제53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.	**제53조(분쟁조정의 개시)** ① 위원회가 제52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.	
제55조(분쟁조정의 거부·중지 및 종료)	**제54조(분쟁조정의 거부·중지 및 종료)**	
제56조(분쟁조정의 결과 처리)	**제55조(분쟁조정의 결과 처리)**	
제57조(보호조치의 권고)	**제56조(보호조치의 권고)**	
제58조(간사)	**제57조(간사)**	
제59조(회의록의 작성)	**제58조(회의록의 작성)**	
제60조(회의의 비공개)	**제59조(회의의 비공개)**	
제61조(비밀누설 금지)	**제60조(비밀누설 금지)**	
제62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54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**제61조(수당 등)**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53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
제63조(운영세칙)	**제62조(운영세칙)**	
제64조(학칙개정)	**제63조(학칙개정)**	